



# INNOPOLIS<sup>+</sup>

ANSAN INNOVATION CLUSTER

## 경기안산강소특구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**INNOPOLIS**  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

시민과 함께, 지구로운  
혁신도시 안산

한양대학교 ERICA  
한국 대학교  
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@ Ansan

# 경기안산강소특구는

대학, 연구소,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(Inovation)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(Town)을 R&D 특구로 지정 육성하여 인구, 주거, 산업,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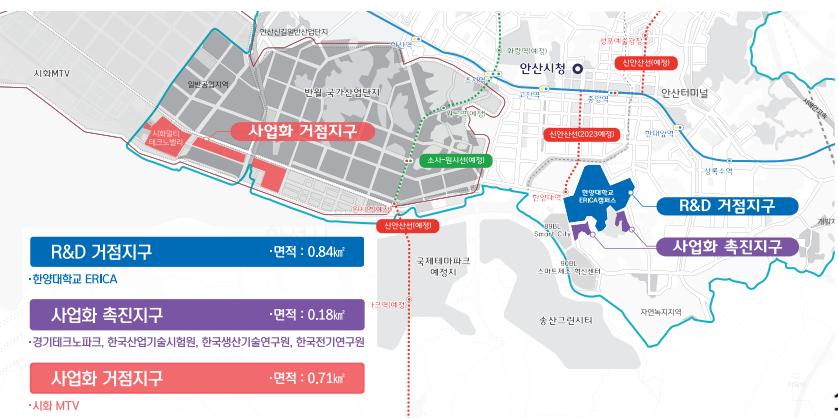
# 1 개요

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|
| <b>지정위치</b>   |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, 단원구 성곡동 일원   |
| <b>기술핵심기관</b> | 한양대ERICA캠퍼스(R&D거점지구)   |
| <b>배후공간</b>   | 사업화촉진지구(경기ITP등), 사업화거점지구(시화MTV신단)  |
| <b>지정면적</b>   | 1,73km <sup>2</sup> (기술핵심기관 0.84km <sup>2</sup> , 배후공간 0.89km <sup>2</sup> ) |

## 2 육성방향

**특화분야** ICT 융복합 부품소재  
협동로보틱스 부품/ 고강도 IoT 센서/ 지능형 임베디드 모듈  
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

## 개 발 구 상 R&D ⇌ BI ⇌ Post BI 연계 공간 운영



연구성과 사업화

지역경제 활성화



## 강소특구('19) 6개

## 장소특구('20) 6개

강소특구('22)  
2개



경기 안산 강소특구 내 기업 확인 방법

토지이율 ([www.eium.go.kr](http://www.eium.go.kr)) 사이트 활용

주소입력

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기업 주소 입력  
\*지번, 도로명, 지도로 검색 가능

결과확인

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>  
문구가 나오면 특구 내 기업 확인

# 경기안산강소특구 INNODESK0807 이란?

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 
해결 및 사업연계 등 후속 지원을 돋는 One-Stop 프로그램

## 1 지원대상

###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공공연구기관 우선 매칭 지원 \*특화분야 “ICT융복합 부품 · 소재”

안산 강소특구  
내 기업

안산시 소재  
특화분야\* 기업

특구육성사업  
수혜기업

## 2 지원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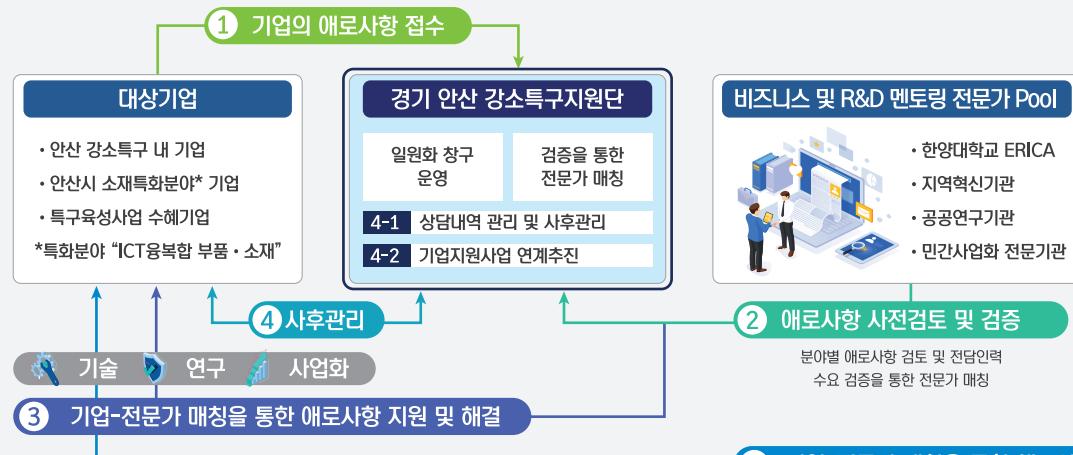
기업당/전문가당 최대 60시간 멘토링 지원 가능

동일분야 멘토링의 경우 주 1회 가능 (최대 4시간/1일)

별도의 기업부담 비용 없음

\*경기 안산 강소특구지원단에서 멘토링 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

## 3 프로그램 운영체계



## INNODESK0807 의미

INNOPOLIS + HELP DESK = INNOPOLIS HELPDESK 0807 → INNODESK 0807  
안산 강소 특구 지정일 2019년 08월07일

## 4 지원분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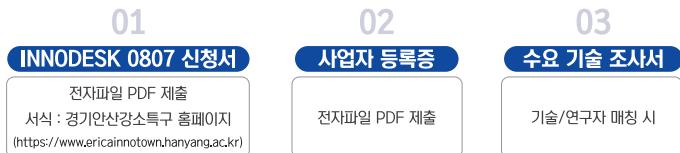
## 5 프로그램 운영 절차



## 6 23년 신설 운영 프로세스



## 7 신청서류



## 8 지원방법 및 문의처

### • 온라인 E-mail 접수

신청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필요로 하는 제품/기술/비즈니스 상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e-mail 접수

### • 사업계획서 및 양식 다운로드

경기안산강소특구홈페이지 (<https://ericainnotown.hanyang.ac.kr/>)

### • 문의처

담당부서 : 한양대학교 ERICA 강소특구지원단

사업담당자 연락처 : 최유리 매니저 ☎ 031-400-4872 ✉ glassc1203@hanyang.ac.kr

# 강소특구 특성화 육성 사업 이란?

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 
해결 및 사업연계 등 후속 지원을 돋는 One-Stop 프로그램

## 1 사업의 내용

**사업 예산** 700 백만원 (지방비)

**사업 기간** 최대 1년 이내 (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행 )

**지원 대상** 경기 안산 강소특구 내외 기업 (단, 2020~2022년도 동 사업 지원 기업 제외)

- ① 경기 안산 강소특구 내 기업
- ② 경기 안산시 소재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또는 경기 안산 강소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창업기업

### 지원 사업

- 1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사업
- 2 ICT 융복합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
- 3 INNODESK0807 후속 연계 지원

## 2 사업 추진 절차



## 3 지원사업 세부내용

### ① 지역특화기업성장지원사업

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하여 기업지원 일원화 창구 운영을 바탕으로  
기업 수요에 적합한 지역 혁신 인프라 연계를 통해 기업의 국내외 시장  
진출을 위한 시험분석·인증 지원(신뢰성 확보) 추진



#### 지원방식

**간접 지원 방식** :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

**사업비지급방식** : 바우처(Voucher) 방식

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 
전문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에게  
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(후불 지급 원칙)

#### 세부지원내용

|      |  |
|------|--|
| 지원분야 | Track 01 일반-시험분석·인증 지원   |
| 세부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</li> <li>●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·인허가 등</li> <li>● 기타 관련 시험분석 및 인증 비용 지원</li> </ul> |
| 지원규모 | 최대 30백만원 이내 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지원분야 | Track 02 지역 혁신기관* 연계 시험분석·인증 지원  |
| 세부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역 혁신 주체와 연계한 시험분석 및 인증 관련 비용 지원<br/>(One-Stop, Fast-Track 지원)</li> </ul> |
| 지원규모 | 최대 50백만원 이내  |

\* 지원규모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및 조정될 수 있음

#### 사업 참여 기관별 의미

#####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사업 기관별 의미 및 역할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수혜기업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(신청기업)으로 특화지원기관의<br/>서비스를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</li> <li>▶ 시험분석·인증 지원 - 수요 해결 및 성과 창출</li> </ul>            |
| 특화지원<br>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술적 역량과 설비 등을 활용하여 특화개별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<br/>수혜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수행기관</li> <li>▶ 수혜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및 시험분석 · 인증 지원</li> </ul> |

## ② ICT 융복합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

기업 보유기술과 공공기술이 결합된  
융복합 기술 창출 및 기업 간 연계를 통한  
제품 고도화 등 사업화 촉진



### 지원방식

기업 당 최대 70백만원 이내(Track별 상이) 특화분야 C&D 과제지원

### 세부지원내용

지원분야 Track 01-1 기업 + 공공연구기관 C&D

- 기업-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콘셉트 검증부터 제품 고도화, 신제품 개발 지원

지원규모 최대 70백만원 이내

지원분야 Track 01-2 기업 + 기업 C&D

- 리딩기업과 기업이 공동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화 전략 도출 및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융복합 기술(제품) 고도화 지원

지원규모 최대 70백만원 이내

지원분야 Track 02 이노폴리스 창업기업 + 공공연구기관 C&D

- 이노폴리스 창업기업-공공연구기관 연계한 사업화 아이템 기술 고도화 지원

지원규모 최대 30백만원 이내

\* 지원규모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및 조정될 수 있음

### 사업 참여 기관별 의미

#### ICT 융복합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 기관별 의미 및 역할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수혜기업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(신청기업)으로 특화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</li> </ul> <p>▶ 시험분석·인증 지원 - 수요 해결 및 성과 창출</p>          |
| 특화지원 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술적 역량과 설비 등을 활용하여 특화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혜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수행기관</li> </ul> <p>▶ 수혜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및 시험분석·인증 지원</p> |

## ③ INNODESK0807 후속 연계 지원

INNODESK0807 프로그램 참여 기업  
수요 발굴 및 Coworking-Group 심의를 거쳐  
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활동 지원



### 지원 방식

지원분야별 상이 ( 최대 5백만원 이내)

### 세부지원내용

- 사업화 전략 수립(BM, 사업 고도화 등)
- 투자 연계를 위한 IR 제작 지원
- 특히 전략 수립 지원

### 지원대상

- INNODESK0807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중 “국가핵심전략 지역 주력산업” 분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



# 연구소 기업 이란?

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안에 설립하는 기업
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3, 시행령 제 13조]

## 1 설립요건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설립 목적  |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립 지역  |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본사를 설립   |
| 설립 주체  | 공공연구기관<br>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<br>신기술창업전문회사(공공연구기관 주식 50%↑)<br>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|
| 설립 자본금 |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% 이상을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 설립혜택



### 국세

세제혜택 법인세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### 지방세

#### 재산세 취득세 감면

- \* 특구별 시세·도세: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최저한세'는 부과대상임

## 설립 주체 |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

### 공공연구 기관이란?

- 국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교, 국방과학연구소, 전문 생산 기술연구소 등
- 국가, 지자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&B비용으로 연간 50% 이상을 출연(보조)받는 법인
- 과학기술의 연구, 조사, 개발,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
- 연구중심병원
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

\* '18.5.8' 특구법'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 3 설립유형

### 합작투자형

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



### 신규창업형

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



### 기존기업전환형

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



## 4 설립절차

###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



#### 기술이전 협의



#### 기술가치 평가



#### 자본출자 및 법인등기 (기술,현금,현물)



#### 등록신청

### 연구소기업 등록



#### 신청서 접수



#### 요건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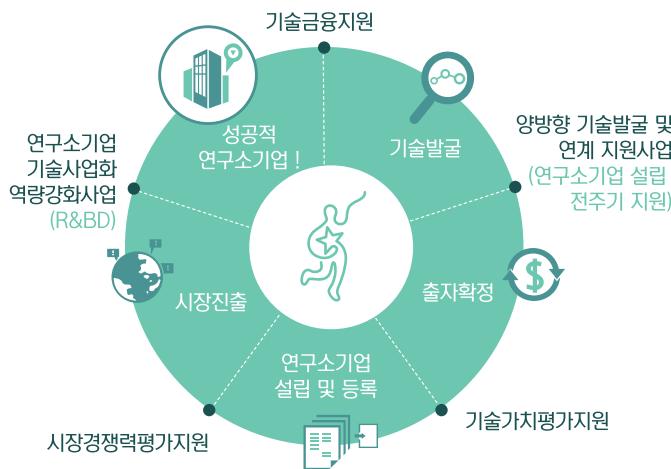


####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



#### 연구소기업 등록

## 5 지원사업



## 6 신청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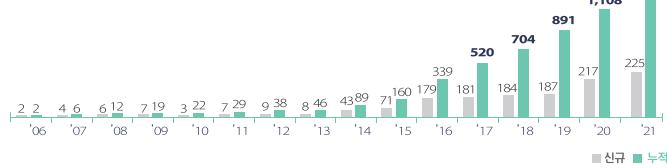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00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제출 공문                 | 11 연구소기업 현황자료 (총괄) |
| 01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| 12 연구소기업 성실이행확인서   |
| 02 연구소기업 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개인정보동의서         |
| 03 보유인력 및 시설현황 (본점 운영 현황 포함)        | 14 출자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  |
| 04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 (주식보유명세서)          | 15 출자기관 사업자등록증     |
| 05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(사업타당성평가 포함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06 연구소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07 연구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08 특허증빙서류 (특허원부, 특허 공개 전문 등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09 기술평가서 (기술이전계약서/ 현물출자확인서 등)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술평가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전계약서·사업타당성보고서 대체 가능 |                    |
| 10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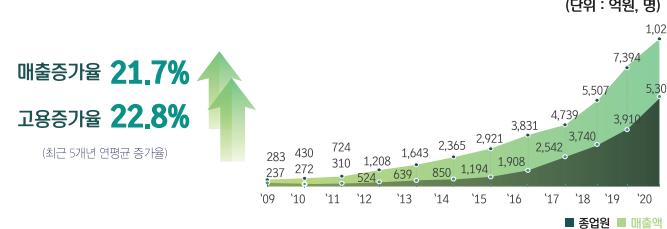
## 7 성장현황

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과 접목하는 연구소기업, 기업성장의 견인차입니다.

### 연구소기업 설립현황



###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



## 8 대표 성공사례

### 연구소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

#### 콜마 BNH(주)



제 1호 연구소기업 ('06년, 원자력연구원)

- 최초 코스닥 상장사 ('15.2.3)
- 대박 연구원 탄생(100억원대 인센티브 예상)
- 연평균 매출액 86% 신장, 고용 39% 증가

사업분야 : 헬스케어      주요제품 : 면역, 항암효과 제품

### 연구소기업 최초 코넥스 상장

#### (주)수젠텍



제 28호 연구소기업 ('11년, 전자통신연구원)

- 최초 코넥스 상장사 ('16.11.11)
- 디지털 임신·배란테스트 등 2종 국내 최초 미국 FDA 승인·유럽 연합 CE 인증
- 코스닥상장회사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한 자체 생산설비 보유

사업분야 : 체외 진단기      주요제품 : 디지털 임신테스트기 등

연구소기업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한 형태로,  
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입니다.

# 첨단기술기업 이란

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, 시행령 제 12조의 3]

## 1 지정요건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특 구 입 주</b>            |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입주 절차가 완료된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첨단기술제품<br/>생산 및 판매</b> | [산업발전법]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,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 |
| <b>매 출 액</b>              |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<br>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% 이상         |
| <b>연 구 개 발 비</b>          |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~5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설립 자본금   | 50억 미만 | 50억원 이상~200억원 미만 | 200억원 이상 |
| 연구개발비 비율 | 5%     | 4%               | 3%       |

## 2 신청절차



- 신청 전,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

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는 날로부터 2년이며,  
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

## 3 신청서류



###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



### 특허 및 첨단 기술제품 명세서

[관련특허등록원부 (1개월 이내) 포함]



### 기업부설연구소 사본

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-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현황
- 확인기간 연구소 직원 변동시 변동 신고서 사본



###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

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 
[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]
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
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 
[첨단기술제품 매출원장]



### 첨단기술제품 확인서

[신청서류 포함]



###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

[1개월 이내]



###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

- 연구개발비 산정표
-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
-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
-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



### 주주명부 및 기타

- 주주명부 최근 및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

첨단기술기업과 관련된 세부사항 신청절차 확인 및 신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
입주관리서비스 <http://minwon.innopolis.or.kr>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4 지정혜택

### 세제혜택

#### 국세

법인세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#### 지방세

##### 재산세 취득세 감면

- \* 특구별 시세·도세·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최저한세'는 부과대상임

### 첨단고시혜택 [산업통상자원부소관]

- 법인등록세 중과 제외 [지방세법]
- 과밀억제지역 내 입지지원  
[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]
-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 우선지원  
[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]
-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금지원  
[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]
- 투자진흥지구 지정[입지]요건  
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등]

### 기타혜택

#### 가산점 부여

-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
[사업별 공고문 참고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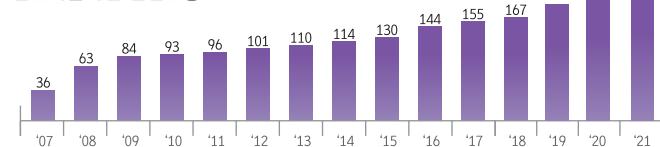
#### 특례 지원

- 국·공유재산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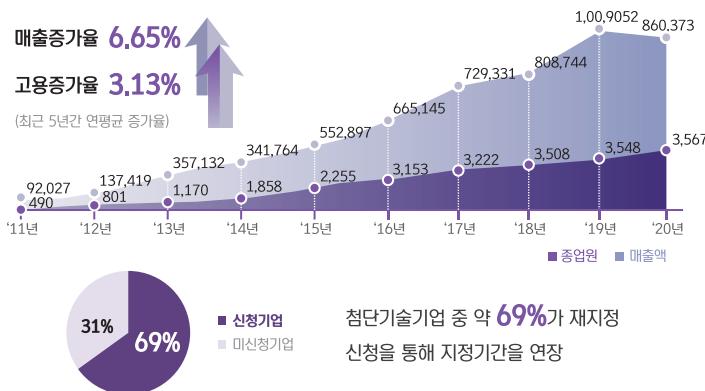
## 5 성장현황

### 첨단기술기업 설립현황



### 첨단기술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

## 6 대표성공사례

### 제24호 첨단기술기업

(대덕특구, 2007.10 등록), 총 3회(6년간) 지정

#### 실리콘웍스

#### ■ 실리콘웍스

▪ 코스닥 상장일('10.6.8)

- 지정기간동안 약 170억원 이상의 세제감면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첨단기술기업의 우수사례가 됨

사업분야 : 반도체 제조

### 제45호 첨단기술기업

(대덕특구, 2008.06 등록), 총 3회(6년간) 지정

#### 골프존

#### ■ GOLFZON

▪ 코스닥 상장일('15.4.3)

- 지정기간동안 약 300억원 이상 세제감면을 수혜받아 신규연구 개발인력 확보 등에 주력할 수 있었으며, 이를 통해 첨단기술 사업화의 성공사례로 거듭남

사업분야 : 영상게임기 제조

## 4차 산업혁명 시대, 혁신성장의 견인차 첨단기술기업

## 신기술 실증특례 란

기존 법령상 규제\*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,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(全)분야의 신기술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

- \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,
-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**용어정리** [※출처 :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]

- 신기술 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
- 실증 :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

### 연구개발특구법 대비 他규제샌드박스 기능 비교대조

| 구분      | 연구개발특구법<br>과기1차관        | 지역특구법<br>중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융합법<br>과기2차관 | 산업융합촉진법<br>산업부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대상지역    | 연구개발특구<br>(기준5개, 강소12개) | 국제자유특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전국             |
| 적용분야    | 전 분야                    | 지역별 특정한 혁신사업/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ICT 융합분야         | 산업융합분야         |
| 활용주체    | 공공기관, 연구자<br>(기임)       |   | 신기술·제품·서비스 전문기업  |                |
| 규제 신속처리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 (허가필요여부 및 요건 등 규제확인 요청 시 30일 내 회신)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특례 임시허가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 (근거법령 없거나 부적합 시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임시허가)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제도 실증특례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차별성     | 기술성숙 및 개발<br>목적 실증특례    |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###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 도입

특구 내 밀집 되어있는 혁신역량이 다소  
부족한 기술기반 초기·창업기업(연구소기업 등)  
도 실증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...



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 
인프라, 지역밀착 행정, 실증사업 등을  
연계 지원 추진!

###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(안) 주요내용

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
| <b>제 도</b>     | · 연구개발 전(全) 단계*에서 발생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<br>*영의적 실증 개념 적용) 시제품 시험·검증·판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      |
| <b>행 정</b>     | · 특구재단·지역본부,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특구 별 실증 원스톱 지역 현장밀착형 지원<br>· 기술이전 단계에서 이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|
| <b>R&amp;D</b> | ·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관, 기업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R&D 예산 지원  |
| <b>데이터</b>     | · 기존 연구개발특구 윤성 기술사업화과제와 실증특례 데이터를 연계한 연구개발특구 실증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 |
| <b>인프라</b>     | · 연구개발특구 실증 인프라 통합 하브 구축(온라인)<br>· 필요 시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(특구 미개발지역에 실증단지 개발 포함)하여 공동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 신청대상

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,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 
①공공연구기관 또는 ②공공기술\*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 
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

\*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이내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



## 3 유효기간

2년 이내 + 2년 이내 연장 가능 (1회 한정)

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 
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신청



- 1 실증특례 연장 신청서
- 2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
- 3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- 4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
- 5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(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, 별도의 배상방안
-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여부를 적은 서류

## 4 필요서류

- ① 실증특례 신청서
- ② 실증특례 계획서
- ③ 실증특례 신청 사유서
- ④ 안전성 확보 계획서

## 5 실증특례 지정절차

|   |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|---|
| 1 | 실증특례 신청    | 수요자 → 과기정통부<br>· 실증특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과기정통부(특구재단)으로 신청  |
| 2 | 관계부처 협의    | 과기정통부 → 규제소관부처<br>· 과기정통부 - 접수된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소관 기관으로 통보<br>· 규제소관부처 - 30일(자료보완 요청 시 90일)이내에 규제 유무에 대해 회신 |
| 3 |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| 과기정통부<br>· 실증특례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진행<br>· 실증특례 지정관련 사전 심의·의결(부가 조건 설정 등) 및 특구위원회 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|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| 과기정통부<br>· 실증특례 지정 최종 심의·의결   |
| 5 | 실증특례 지정    | 과기정통부<br>· 관보 고시 및 관련자에 통보  |

## 6 추가지원

| 구분    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----|--|
| 법률컨설팅         | 실증특례 수요기관에 대한 사전법률상담, 실증특례 대상과제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법률일체에 대한 법률컨설팅 지원  |
| 실증 R&D        |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실험·임상, 국내외 시험분석·인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 지원  |
| 책임보험          |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자가 인적·물적 손해와 관련한 배상책임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   |
| 첨단기술기업        |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분야로 인정하여,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*으로 지정추진<br><small>*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특구기업으로 세제 감면,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기산점 부여 등 혜택 보유</small> |
| 공공(연)-기업 매칭지원 | 실증특례 수요가 있는 특구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중개하여 실증특례 신청 지원  |

## 7 기대효과

- ④ 연구개발자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환경 제공
- ④ 규제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증기회 제공
- ④ 공공(연)이 보유한 공인실험시설의 고도화, 유휴시설의 테스트베드화 추진
- ④ 기술적·사회적 변화속도에 맞춰 관련 규제 법령의 정비 추진

## MEMO



홈페이지 링크

#### 경기안산강소산특구

15588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로 55 산학연협력관 208호

☎ 031-400-4983, 4872, 4873, 4878

✉ ericainnotown@hanyang.ac.kr

🏠 <https://ericainnotown.hanyang.ac.kr/>